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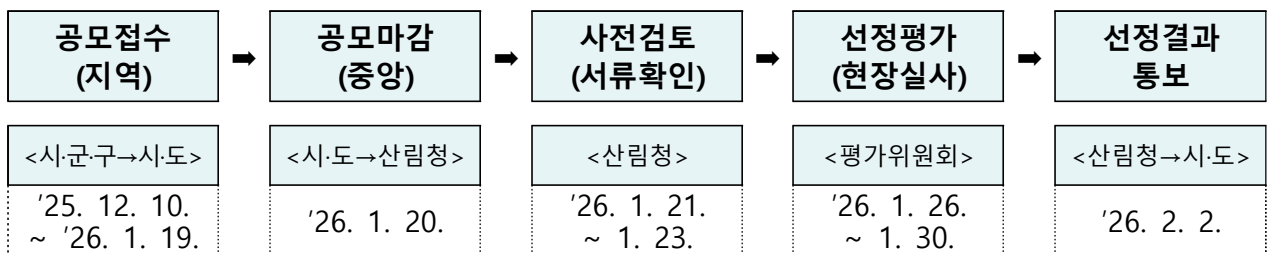
2026년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 공모계획

민간기업 및 산림조합(목재유통센터, 목재집하장)의 목재생산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발생요인 해소 및 목재제품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산목재 시장경쟁력 확보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선정 즉시 사업을 시작하여 2026년 12월까지 완료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예산 : 600백만원(국비 300백만원, 지방비 120백만원, 자부담 180백만원)
 - * 사업비 매칭 최소기준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 지방비와 자부담은 사업기준 보조율을 초과하여 편성 가능
- 사업내용 : 국산목재 생산 노후시설 개선(제재 자동화설비 등)
 - * 목재생산시설 운영을 위한 굴착기, 지게차 등 기계장비 도입 불가
 - * 시설보완에 의한 생산비용 절감, 안전사고 예방 등 기대효과 반드시 제시
- 지원대상 :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업체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38조

○ 추진일정



* 사전검토, 선정평가 등 심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을 완료한 업체
 - 산림조합은 목재유통센터 및 목재집하장을 직접 운영하는 조합만 신청 가능
 - *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

- 신청방법 :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 시·군·구 → 시·도 → 산림청
 - (신청업체)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시·군·구 산림부서에 제출
 - (시·군·구)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성 검토의견 및 관련 서류를 시·도에 제출
 - (시·도) 시·군·구에서 제출한 검토의견과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며, 적합한 업체를 최대 1개소 선정하여 산림청에 제출
 - * 시도에서 산림청에 제출하는 증빙자료 우편물은 '26. 1. 20.(화)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기본자료 및 증빙자료

기본자료	증빙자료
<신청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요약) ■ 사업계획서 ■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 사업신청 자가 진단서 ■ 자부담 협약서 (증빙서류 포함)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비 매칭 협약서 ■ 사업적합성 검토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증 사본 ■ (필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필수) 건물 또는 토지 소유권(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임차대계약서 사본 등) ■ (필수)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발행) ■ (필수)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 (필수) 신규도입 목재생산설비 산출내역서(견적서 첨부) ■ (필수) 2024~2025년 국산목재(원목, 목재제품) 매입 실적 증명서 ※ 국산목재(제품) 확인서만 인정(목재정보서비스에서 발급) (단, 별채허가증 및 매각계약서를 모두 제출하는 경우에는 추가인정) ■ (필수) 2024~2025년 국산목재제품 판매 실적 증명서 ※ 국산목재(제품) 확인서만 인정(목재정보서비스에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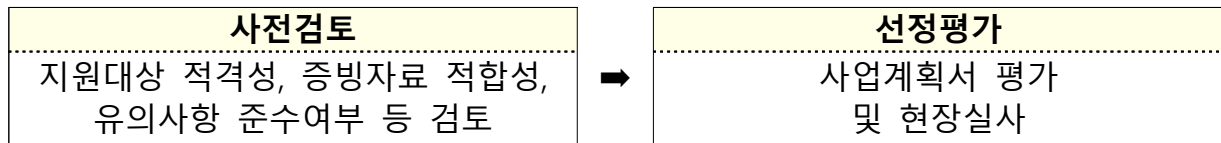
* 기본자료는 참고3~참고8 서식으로 작성

3. 참여제한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목재이용법」 등 산림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처분받은 경우

4. 평가방법



- **(사전검토)** 지원대상 적격성, 참여제한(산림관련 법률 위반, 휴·폐업 등) 국산목재 구입·판매실적, 국산목재(제품) 확인서 등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확정
 -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제출자료 등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관련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기한 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구성)** 목재유통·이용분야 民·官·學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5인 이상)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심의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체계 및 역량, 사업목적 적합성, 사업내용 현실성,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
 - 사업신청자(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의 사업계획 설명 → 질의응답 → 사업평가
 - 발표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이 평가,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산출

5. 유의사항

- **(기본방향)** 본 사업은 기본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식품부 및 산림청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 보조사업자(목재생산업 등록업체)는 내용연수, 실적보고 등 공모계획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
- **(매칭비율)** 대상사업은 국비 50% 이하, 지방비 20% 이상, 자부담 30% 이상인 매칭사업으로, 공모계획에 작성된 매칭 비율로 총사업비를 작성으로 집행
 - * 대상사업 선정 후 사업 진행 시 계약 낙찰 차액, 사업 정산 등으로 인해 국고보조금 매칭 비율이 50% 미만이 될 경우 차액은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국가보조금 환수 조치
 - * 국가보조금 집행 및 결산 시 해당사항을 고려하여 지방비·자부담 비율 50% 이상 준수

- (사업집행) 보조사업자(목재생산업 등록업체)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 등 집행내역을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입력하여야 함
- (부정수급) 허위신청, 가격 부풀리기, 목적 외 사용, 정산서류 조작 등 국가보조금의 부정수급 금지
- (사업변경) 보조사업자(목재생산업 등록업체)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폐지하려면 시·도에서는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 추진
 - * 사업계획서 대비 총사업비 20% 증가 또는 주요 공종 변경 등은 가능하나, 총사업비 감소는 허용되지 않음
- (정산보고서) 보조사업자(목재생산업 등록업체)는 시·군·구에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시·군·구 자료를 검토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함
- (중요재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9조를 준수
 - (사후관리) 물품 내용연수(조달청 고시)를 고려하여, 목재유통 시설보완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12년 동안 정보공시 등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의 승인 없이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음
 - * 사후관리 기간 중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인계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 추진
 - (실적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재산처분 전까지 연도별 운영 실적을 그 다음해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 (안내표지) 보조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입구·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안내표지판 설치 사진자료 등 증빙자료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 (정보공시) 보조사업자(목재생산업 등록업체)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에서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시·군·구는 정보공시 완료 여부를 확인

참고 1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주요 평가기준												
정성 평가 (80)	사업목적 부합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타당성 및 사업목적 이해도 · 재무현황, 생산능력 등 시설보완 사업 적합성 · 사업 추진전략의 차별성 및 우수성 												
	사업수행체계 적절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보완 사업계획 및 사업내용 완성도 · 시설보완 자체 추진 노력도 및 경영역량 · 사업 추진방안의 구체성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사업내용 현실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사업비 편성 타당성 · 목재생산 시설보완에 의한 생산효율 개선 정도 · 국산 목재생산시설 도입 등 지역 및 국내경제 활성화 기여도 												
정량 평가 (20)	국산목재 이용확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간(2024~2025) 연평균 국산목재(원목, 목재제품) 매입 실적 * 국산목재(제품) 확인서만 인정(목재정보서비스에서 발급)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3. 목재구매 정보'에 신청업체의 상호명이 있어야 하며, 구매일자의 연도로 매입시기를, 구매수량(m³)으로 매입수량을 산출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750m³ 이상</th> <th>500m³ 이상</th> <th>250m³ 이상</th> <th>100m³ 이상</th> <th>5m³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배점</td> <td>10</td> <td>9</td> <td>8</td> <td>7</td> <td>3</td> </tr> </tbody> </table> <p>(단, 국·공유림 수확 원목은 매매계약서를, 사유림 수확 원목은 벌채허가증 및 매각계약서 일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추가인정 가능 / 매매(매각)계약서 상 매수자에 신청업체의 상호명 필수)</p>	구분	750m ³ 이상	500m ³ 이상	250m ³ 이상	100m ³ 이상	5m ³ 이상	배점	10	9	8	7	3
		구분	750m ³ 이상	500m ³ 이상	250m ³ 이상	100m ³ 이상	5m ³ 이상								
배점	10	9	8	7	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간(2024~2025) 연평균 국산목재제품 판매 실적 * 국산목재(제품) 확인서만 인정(목재정보서비스에서 발급)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2. 목재제품 정보'에 신청업체의 상호명이 있어야 하며, '3. 목재구매 정보'의 구매일자의 연도로 판매시기를, 구매수량(m³)으로 판매수량을 산출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750m³ 이상</th> <th>500m³ 이상</th> <th>300m³ 이상</th> <th>100m³ 이상</th> <th>5m³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배점</td> <td>10</td> <td>9</td> <td>8</td> <td>7</td> <td>3</td> </tr> </tbody> </table>	구분	750m ³ 이상	500m ³ 이상	300m ³ 이상	100m ³ 이상	5m ³ 이상	배점	10	9	8	7	3		
구분	750m ³ 이상	500m ³ 이상	300m ³ 이상	100m ³ 이상	5m ³ 이상										
배점	10	9	8	7	3										
기타	목재문화지수 (가점)	(최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목재문화지수 시·도별 종합순위('25.12 공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1위</th> <th>2위</th> <th>3위</th> <th>4~5위</th> <th>6위 이하</th> </tr> </thead> <tbody> <tr> <td>배점</td> <td>5</td> <td>4</td> <td>3</td> <td>2</td> <td>1</td> </tr> </tbody> </table>	구분	1위	2위	3위	4~5위	6위 이하	배점	5	4	3	2	1
	구분	1위	2위	3위	4~5위	6위 이하									
	배점	5	4	3	2	1									
예산 규모 (가점)	(최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25년 목재유통이용분야 예산 시·도별 규모(국비기준)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조성, 목재생산업 등록관리, 목재유통센터 시설보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10억 이상</th> <th>5억 이상</th> <th>3억 이상</th> <th>1억 이상</th> <th>1천만원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배점</td> <td>5</td> <td>4</td> <td>3</td> <td>2</td> <td>1</td> </tr> </tbody> </table>	구분	10억 이상	5억 이상	3억 이상	1억 이상	1천만원 이상	배점	5	4	3	2	1	
구분	10억 이상	5억 이상	3억 이상	1억 이상	1천만원 이상										
배점	5	4	3	2	1										
예산 집행행 (감점)	(최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25년 목재유통이용분야 예산 시·도별 평균 실적행률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조성, 목재생산업 등록관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50% 이하</th> <th>60% 이하</th> <th>70% 이하</th> <th>80% 이하</th> <th>80%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배점</td> <td>-5</td> <td>-4</td> <td>-3</td> <td>-2</td> <td>0</td> </tr> </tbody> </table>	구분	50% 이하	60% 이하	70% 이하	80% 이하	80% 초과	배점	-5	-4	-3	-2	0	
구분	50% 이하	60% 이하	70% 이하	80% 이하	80% 초과										
배점	-5	-4	-3	-2	0										

<별첨>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산림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산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산림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산림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산림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산림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6년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계획서**

2026. 1.

업체명

2026년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계획서(요약)

※ 2페이지 이내로 작성

자치단체명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사업명칭	2026년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명)
사업개요	▪ 사업 내용 등 개요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 사업 대상 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수행계획	▪ 사업 수행 계획의 체계성 및 지연방지 대책 등 ▪ 사업추진을 통한 기대효과
국산목재 이용확대 노력	▪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해당 지자체 및 업체의 노력
사업관리역량	▪ 사업 추진 체계 등 조직·인력관리방안 ▪ 사업비 등 자원조달방안 ▪ 사후관리 방안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000백만원 (국비 000백만원, 지방비 000백만원, 자부담 000백만원)
사업 담당자 (시군구, 사업자)	▪ 00시·도 00시·군·구 000과 00담당 직급 성명 (000-000-0000, abc@korea.kr) ▪ 00업체 000부서 00담당 직급 성명 (000-000-0000, abc@korea.kr)

목 차

I. 제목	1
1. 소제목	0
2. 소제목	00
가. 세부제목(필요 시)	00
[별첨]	
1. ○○○○	00

I

일반현황

1. 기본정보

업 체 명		설립일	
설립목적			
기관연혁	(간략하게 작성)		
인력현황	대표자 :	직원 수 :	명 ※ 상시인력 수 기준으로 기재
주 생산품			

2. 최근 2년 동안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A)	2025년(B)	증감(A-B)
유동자산			
고정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이자비용			
...			

※ 항목은 예시로 신청업체 재무현황에 맞게 작성

※ 2025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2023~2024년 기준으로 작성 가능

3. 시설보완 투자현황(조성·운영 이후 ~ 2025년까지)

연도	사업비(집행기준, 백만원)				사업내역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구분	세부내역
1997	2,000	1,000	400	600	건축물	(예시) 사무실, 공장, 차재창고
					기계설비	(예시) 집진기 설비보완
					운반장비	(예시) 지게차
...						
합계						

4. 국산원목 수급현황(2023년 ~ 2025년)

(단위 : m³)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입고	출고	재고	입고	출고	재고	입고	출고	재고
계									
원목구입									
직영벌채									

5. 국산목재(제품) 생산·판매현황(2023년 ~ 2025년)

(단위 : m³)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생산	판매	재고	생산	판매	재고	생산	판매	재고
계									
각재									
판재									
원주재									
내장재									
집성재									
톱밥									
...									

※ 신청업체에서 생산판매하는 목재제품 품목으로 작성

6. 거래처별 국산목재(제품) 판매수량(2023년 ~ 2025년) (단위 : m³)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국가(산림청)			
국가(타부처)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공기관(타부처)			
지자체(같은 시·도)			
지자체(다른 시·도)			
법인사업자			
민간기업			
개 인			

7. 거래처별 국산목재(제품) 매출금액(2023년 ~ 2025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국가(산림청)			
국가(타부처)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공기관(타부처)			
지자체(같은 시·도)			
지자체(다른 시·도)			
법인사업자			
민간기업			
개 인			

II

사업수행 계획

1. 추진목표

- 휴먼명조 14p
 - 휴먼명조 14p
 - * 중고딕 11p

2. 추진전략

- 휴먼명조 14p
 - 휴먼명조 14p
 - * 중고딕 11p

3. 추진 필요성

- 휴먼명조 14p
 - 휴먼명조 14p
 - * 중고딕 11p

<작성참고>

- ① 지원 대상 시설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② 대상 시설의 현황 등을 포함(내용연수, 최근 5년 관리이력, 시설보완 자구 노력 등)
- ③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한 사업 추진목표를 설정하여 기술

4. 사업내용

- 휴먼명조 14p
 - 휴먼명조 14p
 - * 중고딕 11p

<작성참고>

- ① 사업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을 자유롭게 작성
- ② 공종별, 단계별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수행방안을 기술
- ③ 보유설비 운영 현황 설명(사진자료 포함), 개선하고자 하는 생산설비 설명(사진자료 포함)

5. 소요예산

- 휴먼명조 14p
 - 휴먼명조 14p
 - * 중고덕 11p

<작성참고>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을 세분화하여 작성 (산출근거·출처 등 첨부)

6. 추진계획

No.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예) 설비구매 : 계약의뢰												
2	예) 설비구매 : 계약완료												
3	예) 자금조달 : 지원금 신청 등												
4	예) 설비시공 : 설치 완료 또는 ~00기술개발 과제완료												
5													
6													
7													
8													

<작성참고>

- ①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일정을 도표, 흐름도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 ②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일정 지연 요소 등을 분석하여 지연방지대책도 제시

Ⅲ

기대효과

1. 기대효과

구 분	사업 전	사업 후	예상효과
목재구입량(m^3 /년)			
제품 생산량(m^3 /년)			
공장가동률(%)			
경제적 효과(백만원)			
...			

* 시설보완 사업에 적합한 항목을 설정하여 작성하며, 산출근거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2. 산출근거

※ 효과 산정 시, 신청시설을 신청업체에 설치하였을 때의 해당 효과분석 항목의 산출근거를 반드시 작성

(예시) 신청시설 : 제재기 도입

- 사업 전(21년 기준) : 신청업체에서 A 제재기를 도입 전 기존 해당 목재제품 생산량, 경제적 효과 (인건비 절감, 운영비용 절감) 등 산출근거에 따라 기입 가능한 예상 효과 반드시 작성
- 사업 후 : 신청업체에서 A 제재기를 도입 후 해당 목재제품 생산량 00톤 증가 (예상치), 경제적 효과(운영비용 000천원/년 절감) 등 산출근거에 따라 기입 가능한 예상 효과 반드시 작성

3. 기타 기대효과

개 요	
세부내용	

2026년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우리 **000업체**에서는 「2026년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 공고문에 포함된 보조사업의 규정준수, 중요재산 관리 등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제출한 사업이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사업공고문(유의사항)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고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00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참고 5

사업신청 자기진단서(서식)

사업신청 자기진단서

사 업 명	2026년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		
업 체 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진단 사항(해당/비해당 여부를 ‘○’ 표기)

※ 향후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

진 단 내 용	해당여부		비고
	해당	비해당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			
• 휴·폐업 중			
• 산림관련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최근 1년)			

2026년 월 일

00업체 000 (인)

00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026년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 자부담 확보 협약서

우리 **000업체**는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2026년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자부담 부담분을 아래와 같이 마련할 것을 약속합니다.

(단위: 백만원)

자부담 매칭금액	확보 시기	확보방안
000	'26. 00월	자부담 증빙, 확보방안 작성

붙임 **자부담 증빙서류 00부**. 끝.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00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026년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
지방비 매칭 확약서**

우리 000(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 제출하는 000업체가 ‘2026년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에 선정될 경우,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비 부담분을 아래와 같이 마련할 것을 확약합니다.

(단위: 백만원)

지방비 매칭금액	확보 시기	구체적 확보 일정
(광역시) 000	(광역시)'26.00월	(예시) '25.0월 0차 추경예산(안) 편성 '25.0월 0차 추경예산(안) 예산부서 협의 '25.0월 0차 추경예산(안) 의회승인
(기초) 000	(기초)'26.00월	(예시) '25.0월 0차 추경예산(안) 편성 '25.0월 0차 추경예산(안) 예산부서 협의 '25.0월 0차 추경예산(안) 의회승인

2026년 월 일

(특·광역시·도 단체장) (단체장명) (인)

00시·도 00예산과 과장 0 0 0 (인)

00시·군·구 00예산과 과장 0 0 0 (인)

산림청장 귀하

참고 8**사업내용 지자체 검토서(서식)**

□ 기관명 : ○○시·군·구

- 사업명 : 2026년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
- 신청자 :
- 사업내용 :

검토 항목		검토 의견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3.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4. 사업 전망 및 사후 관리계획	
5. 지방비 확보와 연계한 사업추진일정의 타당성 (보조사업 자체심의, 추경 일정 등 고려)		
6. 산림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 확인 결과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여부)		
7. 종합평가 의견		

2026년 월 일

- 작성자(시·군·구 담당) : 소속 직급 성명 (인)
- 검토자(시·군·구 계장) : 소속 직급 성명 (인)
- 확인자(시·군·구 과장) : 소속 직급 성명 (인)